

예고사항에 항목별 의견서

개정안	수정안	의견
KDS 41 19 00 : 2021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지질)가 수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에 의한 (별표1)에 의하면 「기술부분(토목부분)-전문분야(토질·지질)」로 분류되어 있음.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이 (별표1) 2011년5월1일부터 개정됨.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범위)는 (별표1)에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및전문분야를 「직무분야(토목)-전문분야(토질·지질)」로 규정하고 있음.

(첨부 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u>건설부문</u>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후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4) 표면처리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3) 금속재료
전기·전자부문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통신·정보처리 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3) 화학장치설비
섬유부문	1) 방사 4) 염색가공	2) 방적 5) 생사	3) 제포 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20) 지질 및 지반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농림부문	1) 식품 4) 종자	2) 농화학 5) 산림	3) 축산 6) 임산가공

해양·수산부문	1) 해양 4) 수산제조	2) 수산양식	3) 어로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3) 핵연료

2. 2011년 5월 1일 이후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첨부 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 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